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1월 06일
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 
김종길, 문성호, 박춘선,  
윤종복, 이민석, 이상욱,  
이종태, 허·훈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위촉, 제척, 회피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함(안 제9조제4항제1호)
- 나. 주택의 건설·공급·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4항제3호가목)
- 다.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4항제3호나목)
- 라. 주택정책자문단의 위원 위촉 관련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3)
- 마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거기본법, 주거기본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풍부한”을 “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주택의 건설·공급·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
제9조의3제5항 중 “제척 및 회피”를 “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”로, “제15조,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을”을 “제9조제4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를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은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<u>서울특별시 의회</u> 의원 3명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<u>풍부한</u> 사람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----- 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 <u>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</p> <p>가. <u>주택의 건설·공급·거래</u> <u>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</u> <u>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나. <u>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</u> <u>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</u> <u>람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촉,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15조 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

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음)

⑤ -----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----- 제9조제4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를 -----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를 준용한다.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같은 조례 제9조(구성)제4항제1호의 자구를 수정하고, 제3호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김    진   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